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7 선고 2022가단3337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단체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12. 6.

판결 선고2023. 1. 17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하여 2021. 9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. 9. 10. 접수 제118886호로 마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해주었다.

대출과목 : D

약정금액 : 금 75,000,000원

계약일 : 2020. 5. 20.

약정기한 : 2022. 5. 20.

이자 : 기준금리 + 연 1.1%

지연이율 : 최고 연 24%

나. C은 약정기한인 2022. 5. 20. 지나도록 대출금 잔액 64,000,00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.

다. 한편, C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21. 9. 10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8886호로 지분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되고,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해위라고 할 것이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C과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C에게 대여한 돈 중 받지 못한 5,000만 원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

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[피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인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)].

다. 소결론

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김정우

별지